

전라북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교권전담 변호사, 산업보건 분야 -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교권전담 변호사, 산업보건 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교권전담 변호사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1명	전북교육인권센터
산업보건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8급)	1명	학교안전과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무내용
교권전담 변호사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강사)○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무내용
산업보건	지방교육행정 서기 (일반임기제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등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업무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247호)

4.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p>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